



전원 전 병원의 오진 여부가 문제가 된 사안

당 법무법인에서 진행한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0. 선고 2019가합502988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 병원이 진단상 과실로 망인의 상태를 오진하였다거나 소견서 또는 진단서 작성·발급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망인 A는 2016. 8. 16. 목 부분에 무언가가 잡히는 증상으로 같은 달 18. ○○병원(이하 피고병원¹⁾)으로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위 병원 의료진이 같은 달 23. 망인의 좌측 쇄골 림프절에 대한 조직검사를 시행한 결과 악성종양으로 확인되어 망인은 같은 달 30. 위 병원 이비인후과에 입원하게 되었고, 같은 해 9. 2. 전신 양전자방출컴퓨터단층촬영(PET-CT) 검사를, 같은 달 3. 복부 컴퓨터단층촬영검사(CT)를 각 받았다. 피고병원 소속 판독의는 위 PET-CT 영상을 판독한 후, 다수의 림프절 전이가 있는 췌장두부 및 팽대부암이 의심된다고 판독하였다.

이후 망인 A는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2016. 9. 5. 11:00경 퇴원하면서 위 병원 이비인후과에서 발급한 소견서 및 진단서와 위 복부 CT 영상을 비롯한 각종 영상자료를 담은 CD를 교부받았다. 위 소견서 및 진단서에는 주상병이 ‘상세불명의 췌장의 악성 신생물’로 기재되었고, 이와 함께 소견서에는 ‘PET-CT 촬영 판독결과상 다수의 림프절 전이가 있는 췌장두부 및 팽대부암 의심소견이 확인되었다’는 내용이, 진단서에는 ‘PET-CT, 복부 CT상 상기 진단 의심되는 상태로 확인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었다. 그런데 피고병원 판독의는 망인의 퇴원 직후인 같은 날 17:09경 위 복부 CT 검사 상 췌장실질에는 국소병변이 없다는 취지로 판독소견을 제시하였다.

망인 A는 2016. 9. 7. ××병원에 내원하여 의료진에게 피고병원에서 교부받은 소견서와 진단서 및 영상CD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병원 소화기내과 의료진은 망인의 상태를 췌장암으로 잠정 진단하고 같은 달 11. 입원한 망인에게 췌장암에 대한 항암치료를 하였고, 이때 사용한 항암제는 신독성을 가지고 있었다.

망인은 두 번째 항암제 투여 이후 목 부위의 종괴가 커지는 것 같고, 세 번째 투여

1) 원고는 ○○병원과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본 사례는 당 법인이 대리한 ○○병원의 사안만 정리하고 모든 피고병원은 ○○병원을 지칭함.



이후에는 복부에서도 덩어리가 만져진다고 호소하며 2016. 11. 14. 다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시행된 복부 및 경부 CT 검사에서 췌장에는 병변이나 췌장암의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고 오히려 신장암의 가능성이 크다는 판독 결과가 나왔다. 이후 ××병원 의료진은 조직검사 검체에 대하여 병리검사를 시행하여 망인이 신세포암임을 확인하고 신세포암에 대하여 치료하였으나, 망인은 회복되지 못하고 타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망인의 가족들(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은 ① 피고병원에서 시행된 PET-CT 및 복부 CT상으로 망인의 췌장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으나 이를 췌장암으로 오진하고 소견서 및 진단서에 잘못 기재하였고, ② 특히 나중에 확인된 복부 CT 결과상으로 망인의 췌장에는 이상 없음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병원의 의료진은 해당 검사 결과를 반영하여 소견서 등을 수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③ 이러한 피고병원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적시에 신세포암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신독성이 강한 췌장암에 대한 항암제 등을 투여 받은 결과 망인의 신장 기능이 완전히 악화됨으로써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다.

당 법무법인은 ○○병원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는데, ‘① 피고병원 소화기 내과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영상검사를 확인한 후 망인과 면담을 통해 췌장을 비롯한 주변부인 췌대부 주위암, 후복부 종양의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추가 검사 및 시술이 필요함을 설명하였으나 망인이 전원을 원하여 당시 판독결과가 보고된 PET-CT의 결과를 토대로 확진이 아닌 의증임을 기재하여 진단서 및 소견서를 발급하였고, ② 췌장암 등 원발암에 대한 진단검사는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망인이 전원을 원하였는바,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 A에 대하여 오진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③ 환자가 타 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 전원 받은 병원에서는 이전 병원의 판독지 유무와 무관하게 이전병원의 영상을 재판독하므로 판독결과 없이 영상만 발급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반론하였다.

법원은 ①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을 췌장암으로 확진하지 않고, 정확한 원발암 진단을 위하여 추가 검사 및 전과 등을 예정하고 있었으며, 이는 망인에게도 충분히 설명이 되었으나, 망인은 그와 같은 추가 검사나 2016. 9. 3.자 복부 CT영상에 대한 공식 판독 소견이 나오기 전에 스스로 퇴원하였고, ② 피고병원의 PET-CT 검사상 복부에 다발성 림프절 전이가 보이는 상황이었는바, 췌장과 신장 모두 후복막에 위치하기에 이 사건과 같이 종양의 크기가 크면 췌장암과 신장암이 서로 비슷한 증



상을 보일 가능성이 존재하며, 판독의는 위 영상판독에서 췌장두부 및 팽대부암이 ‘의심된다’는 표현을 써, 췌장암이 아닐 가능성을 제시함과 동시에 추가 감별진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혀, 위 판독 소견이 허위나 오류라고 볼 수는 없으며, ③ 진단서상의 ‘복부 CT상 상기 진단 의심되는 상태’라는 기재는 잘못된 것으로 보이나, 전체적인 취지는 ‘췌장암이 의심되기는 하나 아직 확진된 것은 아니고 향후 소화기 내과 진료에 따른 치료방침 결정 등이 필요하다’는 취지이다. 또한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감별 진단을 위한 추가 검사 등의 필요성을 설명함과 더불어 위 복부 CT영상을 포함한 영상자료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망인이 전원 가는 병원에서 원발암 감별과 복부 CT영상에 대한 별도 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이런 모든 사정을 보면 비록 진단서 상에 잘못 기재된 부분이 존재하나, 그것이 ‘췌장암 확진이 아닌 의심단계’라는 전체적인 진단 취지를 허위로 밝히거나 왜곡한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병원 의료진들이 의료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최근 생활수준 향상과 함께 의료접근성이 높아지고, 교통수단의 발달 등 다른 부수적인 요인들이 함께 작용하여 환자들의 의료기관 선택의 폭이 확대됨에 따라 환자들이 기존에 진료받던 병원에서 타 병원으로 전원을 가는 경우도 흔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사고 발생 시 전원 전 병원과 전원 후 병원 중 어느 병원이 책임져야 할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 사안의 피고병원과 같이 환자에게 당시의 상태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이를 의무기록에 기재해 둠으로써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분쟁에 잘 대비할 필요가 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민 변호사/의사

TEL. 02 565 9801

E-mail. jmhong@lkpartner.co.kr